

2021학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(대학생, 대학원생) 전입신고 안내문

(공지#1) 2021년도는 예비군 소집훈련 미실시로 인하여 **원격(온라인)교육이 예정되어**있습니다. 이에 따라 모든 학생예비군 대상자는 **개인(보호자)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수신 정지가 발생**하면 추가적인 예비군훈련과 안내 등 자료를 **받아볼 수 없음**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고 **변동사항**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전주대학교 예비군연대로 **문의 및 수정요청**을 하시기 바랍니다.

(공지#2) 우리 대학교에 재학중인 예비군 학생은 2학기 **등록금을 납부 후** 학생 **본인이 직접** 예비군연대에 **전입신고** 하여야 합니다.

(공지#3) 전입신고가 된 학생예비군은 1개 학기 이수 시 **연간 8시간의 훈련**을 받게 됩니다.
※ 전입신고 **미신고** 및 1개 학기 **미이수 시** 지역예비군으로 편성되어 **동원훈련(28시간)** 또는 **동미참 훈련 (32시간)**이 부과되니 이에 따른 **불이익**이 없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2021학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**전입신고 방법**

가. 대상: 우리대학 재학중인 예비군 학생 중 **등록금을 (기)납부 한 학생에 한함.**

나. 기간: 2021. 8. 23.(월)부터 **2학기 등록금 납부 후 14일 이내** 직장 예비군연대로 신고

다. 장소: 직장 예비군연대(스타센터 237호)

라. **전입신고 방법**: 아래 1)항은 신입학 및 휴학 후 복학생 적용, 2)항은 기존 재학생 적용

1) 신입학, 휴학 후 복학생 전입신고는 아래 가), 나)항 중 1가지 선택 후 신고

가) 직장 예비군연대 **직접 방문** → 전입신고서 작성(예비군연대 비치) → 신청

나) **FAX** 또는 **전자통신망** 이용 제출(제출 포함서류: ① 전입신고서, ② 재학 증명서)

* FAX 번호: 063-220-2528, 전자통신망 담당자 이메일 주소: ddrcomkim@hanmail.net

2) 기존 재학생 전입신고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 아래 가)항 절차를 거쳐 편입 조치

가) 기존 재학생은 직장 예비군연대로 **전화**하여 **등록금 납부와 수강 재등록 여부** 신고

나) 특히, 재학생 중 **인적사항**(전화번호, 이메일, 개명 등) **변동**된 학생은

반드시 유선으로 **변동된 사항**을 **추가 신고** 하여야 합니다.

2. 전입 신고 시 참고사항

가. '수업연한 초과자' 적용 기준

1) **대학생**: 일반학과, 간호학과, 미래융합대학은 **8학기까지**
건축학과는 **10학기까지 적용**하며 **이후 불가함.**

2) **대학원생**: 일반 대학원은 **4학기까지** 특수 대학원은 **5학기까지 적용**하며
이후 불가함.

나. '졸업연기(유예)자', '유급자', '복수전공, 연계전공', '휴학자', '제적자' 등은
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.

다. 기존 재학생, 신입학, 복학(군 복학 등), 편입학 학생은 학과에 수강 등록 후
직장 예비군연대로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안되니 반드시 **위에 전입신고 방법**을
참고하여 **개인이 직접 전입신고가 되도록** 바랍니다.

3. 유의사항 (꼭!!! 읽으세요)

가. 학생예비군은 **학적 상태가 재학**(8학기 이하)인 **학생**들만 **편성**되며, **휴학,**
자퇴, 미복학, 제적, 졸업, 수업연한 초과(9학기 이상) 등의 **사유**로 **학적**상태가
변동된 학생은 거주지 지역예비군대로 **전출**되어 **거주지 지역 예비군동대**에서
부과되는 **훈련**을 **받아야** 합니다.

나. **영간 1개 학기 이상을 이수**한 경우 당해년도 방침 일부보류자로 판정되어 **8시간**
훈련만 이수하며, **1개 학기를 이수하지 않고 전출된 자원**은 **거주지**
지역 예비군으로 편성된 후, 재학 중 **이수한 훈련 외 잔여 훈련**을 **이수**해야
합니다.

다. **개명, 전과, 이메일 주소, 휴대폰 번호** 등 개인정보의 **변동상황**이 있는 경우
직장 예비군연대(☎063-220-2322)로 **즉시 통보** 바라며, 「예비군법」 제6조의 2와
제10조의 10에 의거 **소집통지의 수령을 거부**하는 경우 **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**
있으니, 직장 예비군연대에서 발송하는 **이메일**과 **휴대폰 SNS의 문자**
통지 내용은 반드시 **확인**하고 내용에 따른 **조치사항**을 **응대**주셔야 개인에게
불이익이 **발생**하지 않습니다.

(중요) 이월보충훈련 대상자는 예비군이 끝나는 8년차까지 소집훈련 대상자가 되며
정당한 사유없이 **이월보충훈련** 및 해당년도 **예비군훈련 무단 불참** 시에는
고발 조치 되어 **벌금형** 또는 **형사처벌**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☞ 문의사항은 직장 예비군연대 ☎ 063-220-2322, 063-220-2156

전주대학교 직장 예비군연대